



신청의 취하

38

- 시기
 - 신청인이 신청 후 언제든지 취하 가능
 - 보전명령이 발하여진 후에도 그 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취하 가능
- 피신청인의 동의 요부
 - 피신청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
 - (본안소송에서 답변이나 변론 후 소취하시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 것과 다름)
- 신청취하의 방법
 - 원칙적으로 취하서 제출
 - 다만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서는 구두에 의한 취하도 허용
- 효과 :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

가처분결정의 유형

39

- ◆ 각하결정
 - ◆ 채권자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
- ◆ 기각결정
 - ◆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
 - ◆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 부족
 - ◆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
- ◆ 인용결정
 - ◆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
 - ◆ 피보전권리,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有
- ◆ 일부 인용, 일부 기각결정

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의 사례

40

<결정 주문 사례>

1.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이십억(2,000,000,000)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,
 - 가.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, 양도,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서 포함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나. 피신청인은 그 사무소, 공장, 창고,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.
2.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각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.

별지 <목록>

하기 구조식의 ranitidine 염산염 및 이를 함유하는 의약품 (상품명 "000"이라는 제품 포함) + 구조식

신청취지 별지의 중요성

41

1. 피신청인은 **별지 도면 및 설명서 기재 제품**을 생산, 사용, 판매,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.

실무 : 신청서에 **별지 도면 및 설명서**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이 생산, 사용, 판매, 배포하고 있거나 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명확히 특정함. **특정을 잘 해야 가처분 인용시 집행이 가능하게 됨.**

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취지의 예

42

1.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상표를 사용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, 그 포장지, 포장용기, 선전광고물을 생산, 판매, 반포, 수입, 수출, 전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위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, 공장, 창고, 영업소,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목록 제1항 표시의 상표를 사용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제품 및 반제품, 포장지, 포장용기,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,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3. 집행관은 위 제1항의 경우에는 그 금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, 제2항의 경우에는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각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기타 금지가처분 주문의 다양한 예

43

- ◆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을 출판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 채무자의 위 서적에 대한 점유를 풀고, OO법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.
- ◆ 채무자는 별지 기재 물건을 생산, 사용, 판매, 양도, 대여, 양도·대여를 위한 전시 또는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◆ 채권자의 OO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취소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를, 채무자2는 위 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◆ 채무자는, 채권자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기재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을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
- ◆ 다양한 신청취지 및 주문 허용 + 창의적 접근 필요!!

담보의 기능

44

- ◆ 주된 기능
 - ◆ 위법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해 줌
- ◆ 부수적 기능
 - ◆ 채권자의 남용적인 가압류, 가처분 신청을 억제
 - ◆ 담보액 상향
 - ◆ 부동산가압류 < 채권가압류 < 유체동산가압류
 - ◆ 현금공탁
 - ◆ 임금채권, 예금채권가압류
 - ◆ 출자증권지분가압류
 - ◆ 유체동산가압류

조정 또는 화해

45

- 가처분 절차 진행 중 가처분 소송물에 대한 조정 또는 화해 가능
 - 이 경우 조정 또는 화해가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잠정적인 합의임을 명시하여 두는 경우도 있음
- 가처분 절차에서 본안소송(특허침해소송)의 소송물에 관한 조정 또는 화해가 가능한지?
 - 견해 대립이 있으나, 법원 실무는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임
 -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라 하나,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음
 - 가처분 절차에서 본안소송에 관한 조정, 화해 성립시 본안소송은 별도로 소를 취하여야 함

가처분 결정의 집행

46

- 담보금 또는 보험증서를 법원에 제출
- 집행관에 의한 고시
- 고시문의 예시

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1111 특허권침해금지등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

 1.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용, 양도,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정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소재지 :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

2017. 12. 1.
집행관 정호동
- 집행의 시기
 - 심결문 수령 후 14일 내에 집행하지 아니하면 집행력 상실
 - 집행력을 상실하였어도 침해자의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추후 손해배상에 별다른 영향은 없음(과실상계의 문제는 발생 가능)

지재권분쟁, 특허심판소송, 침해소송, 민형사소송, 손해배상, One-Stop 대응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